



##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에 따른 시스템 일시중단 안내

국민건강과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,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더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정보시스템 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부터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 다가오는 추석연휴에 최종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.

이에 최종 이전기간 **심사평가원 시스템 중단**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1) 중단기간:** 2025.10.2.(목) 18:00 ~ 2025.10.9.(목) 23:00(약 7일 소요)

- 단, 서비스 중단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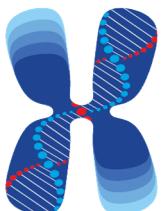
**2) 중단대상:** 요양기관업무포털, 진료비청구포털, E-평가시스템, 심사평가정보제출 시스템, 자동차보험심사시스템 등 전체 서비스

※ 다만,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(DUR)는 최소 중단(이전 시점부터 약 2시간 소요) 후 정상 운영됩니다.

이로 인해 부득이 ①건강보험 추나요법, ②건강보험 첨약 시범 사업, ③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실시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기타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련 업무에 따라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| 관련 업무            | 문의부서   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①건강보험 추나요법       | 심사기준실 기준운영부       | 033-739-4710~4     |
| ②건강보험 첨약 시범 사업   |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     | 033-739-1556~7     |
| ③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|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| 033-739-3464, 3480 |
| ④추나요법 및 첨약 정보시스템 | 디지털운영실 정보관리부      | 033-739-0812, 0815 |



**건강보험심사평가원**
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

Tel 1644-2000 Fax 033-811-73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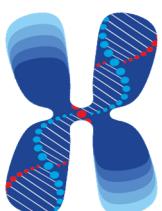
<http://www.hira.or.kr>



## ① 건강보험 추나요법 실시 관련 주의사항 안내

1. 추석연휴 중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추나요법 실시는 가능하나, 「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」(고시 제2021-10호, '21.1.14.시행)에 따라 추나요법은 환자당 연간 20회까지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환자별 실시횟수 확인 및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실시횟수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실시횟수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급여횟수 산정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급여기준 상 환자당 연간 20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는 비급여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 상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실시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단, 20회 초과 여부가 불명확한 환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협의를 통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조회·등록 시스템으로,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중단 기간에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속·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스템 중단 기간 중 실시한 환자별 내역을 **10.13.(월) 24:00 까지 추나요법관리시스템에 등록**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미등록 건은 추후 등록 및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위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기준 운영부(T.033-739-4710~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**건강보험심사평가원**  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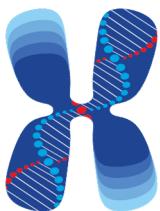
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 
Tel 1644-2000 Fax 033-811-7306  
<http://www.hira.or.kr>



## ② 건강보험 첨약 시범사업 관련 주의사항 안내

1. 추석연휴 중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첨약 처방은 가능하나, 「첨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 지침에 따라 급여기준\* 준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「첨약 수진자관리시스템」을 통한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첨약을 처방하였던 환자의 처방 정보를 별도의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급여 기준 산정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- 나. 급여기준\* 내 처방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, 이를 초과한 경우 전액본인부담(급여 일수 초과 등) 또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(연간 2개 질환 초과 등)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 상 첨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첨약 처방일수 등 급여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2. 첨약 수진자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조회·등록 시스템으로 중단 기간에 첨약을 처방한 경우에는 신속·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해당기간 중 실시한 환자별 내역을 **10.13.(월) 24:00 까지 수진자관리시스템에 등록**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미등록 건은 추후 등록 및 요양급여 청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위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(T.033-739-1556~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**건강보험심사평가원**  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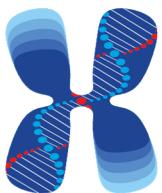
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 
Tel 1644-2000 Fax 033-811-7306  
<http://www.hira.or.kr>



### ③ 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실시 관련 주의사항 안내

1. 추석연휴 중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처방은 가능하나, **환자별 실시횟수 확인 및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  - 가. 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투여일수 및 실시횟수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첨약 및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실시횟수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자동차보험 청구 실시횟수 산정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 
※ 추나요법 적용기준(고시 제2019-225호, '19.5.8.시행)에 따라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
  - 나. 자동차보험 적용기준 상 첨약 및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진료 상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**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환자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실시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  
※ 단, 추나 20회 초과 여부 및 한방첨약 총투여일수 확인이 불명확한 환자에게는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협의를 통해 실시하며, 환자 본인 확인을 통한 이전 투여일수 및 실시 횟수에 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**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2. 첨약 및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은 **실시간 조회·등록 시스템**으로, 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 중단 기간에 첨약 및 추나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**신속·정확한 정보제공**을 위해 시스템 중단 기간 중 실시한 환자별 내역을 **10.13.(월) 24:00 까지 첨약 및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등록**하여야 하며, 기한 내에 미등록 건은 추후 등록 및 자동차보험 청구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기타 위 안내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(T.033-739-3464, 348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**건강보험심사평가원**  
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

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  
Tel 1644-2000 Fax 033-811-7306  
<http://www.hira.or.kr>

# 추나요법 · 첨약 관리시스템 질의응답

## □ 추나요법 · 첨약 관리시스템 관련

| 순번 | 구분 | 세부내용   |
|----|----|--|
| 1  | 질의 | 디지털클라우드센터 이전은 왜 하며, 모든 시스템이 왜 장기간 중단 되는지요?   |
|    | 답변 | 현 심평원 데이터센터의 공간, 전력, 공조 등 기반 설비 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후 일괄 이전을 실시합니다.(‘23~‘25년 사업)<br>심평원 내 서버, 네트워크, DB 등 모든 정보시스템, 약 2,000여대 장비의 일괄 중단 후 이전 및 이후 검증까지 수행함에 따라 약 7일 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. |
| 2  | 질의 | 심평원 정보시스템 중단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?   |
|    | 답변 |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18:00부터 2025년 10월 9일 목요일 23:00까지입니다. 단, 중단 종료시기의 경우 데이터센터 이전 상황에 따라 단축 포함 변동 가능합니다.   |

## □ 건강보험 추나요법관리시스템 관련

| 순번 | 구분 | 세부내용  |
|----|----|---|
| 1  | 질의 |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이 중단되면 추나요법 진료를 할 수 없나요?   |
|    | 답변 | 추석기간 중 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정상 진료 실시가 가능합니다. 단,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합니다.   |
| 2  | 질의 | 시스템 중단 기간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  |
|    | 답변 |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실시횟수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실시횟수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급여횟수 산정과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. |

| 순번 | 구분 | 세부내용   |
|----|----|--|
| 3  | 질의 |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진료 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  |
|    | 답변 | 급여기준 상 환자당 연간 20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는 비급여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 상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실시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 |
| 4  | 질의 |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한데, 급여기준에 따른 환자당 연간 20회를 초과하여 진료가 가능한가요?  |
|    | 답변 | 진료는 가능하나 급여 적용은 불가능합니다. 급여기준* 상 환자당 연간 20회를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 비급여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상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 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실시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「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」(고시 제2021-10호, '21.1.14.시행) |
| 5  | 질의 | 과거 추나요법 실시횟수가 불명확한 환자에게 추나요법을 실시하려고 합니다. 진료가 가능할까요?  |
|    | 답변 | 환자의 상태 및 진료상 추나요법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확인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,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협의한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
| 6  | 질의 | 추석기간 추나요법 실시내역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?  |
|    | 답변 | 실시간 조회 및 등록 시스템으로 타기관 등 원활한 진료를 위해 시스템이 재개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( <u>10월 13일 월요일 24시 까지</u> )에 환자별 실시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   |
| 7  | 질의 | 급여 적용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, 환자(혹은 요양기관)가 실시횟수를 착각하여 연간 20회가 초과되었습니다. 청구가 가능할까요?   |
|    | 답변 | 일단 시스템이 재개되면 실시내역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 사후관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 |

| 순번 | 구분 | 세부내용   |
|----|----|--|
| 8  | 질의 | 건강보험 추나요법, 건강보험 첨약 시범사업, 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관련 상세 문의는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하나요?  |
|    | 답변 | 건강보험, 의료급여, 보훈 환자 추나요법은 기준운영부(☎ 033-739-4710~4)로, 건강보험 첨약 시범 사업은 수가개발부(☎ 033-739-1556~7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<br>또한 자동차보험 첨약 및 추나요법 실시 안내는 (☎ 033-739-3464, 3480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|
| 9  | 질의 | 의료급여, 보훈 환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까?  |
|    | 답변 | 의료급여, 보훈 환자도 건강보험 추나요법 실시와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.  |

## □ 첨약 수진자관리시스템 관련

| 순번 | 구분 | FAQ  |
|----|----|--|
| 1  | 질의 | <b>첩약 수진자 관리시스템이 중단되면 첨약 처방을 할 수 없나요?</b>  |
|    | 답변 | 추석기간 중 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첨약 처방이 가능합니다.<br>단, 첨약 수진자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합니다.   |
| 2  | 질의 | <b>시스템 중단 기간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</b>  |
|    | 답변 | 첨약 수진자 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급여적용일수 등 처방이력에 대한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첨약 처방하였던 환자의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급여기준 초과와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.   |
| 3  | 질의 | <b>첨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</b>  |
|    | 답변 |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2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며, 한의사별 처방 건수 제한(1일 8건, 월 60건, 연 600건 이내 처방) 등 상세한 내용은 [참고2]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
| 4  | 질의 | <b>실시간 조회가 불가능하면 처방 및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</b>  |
|    | 답변 | 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「첨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」지침에 따른 급여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. 급여기준 내 처방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는 전액본인부담(급여일수 초과 등) 또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(연간 2개 질환 초과 등)이므로 환자의 상태 및 진료 상 필요하여 첨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첨약 건강보험 처방이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| 5  | 질의 | <b>과거 첨약 처방 이력이 불명확한 환자에게 첨약 처방이 가능할까요?</b>  |
|    | 답변 | 환자의 상태 및 진료상 첨약처방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확인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고,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협의한 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|
| 6  | 질의 | <b>첨약 수진자 관리시스템에 진료정보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?</b>   |
|    | 답변 | 수진자 관리시스템은 실시간 조회 및 등록 시스템으로 타기관 등 원활한 진료를 위해 시스템이 재개된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 (10월 13일 24시까지) 환자별 처방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   |
| 7  | 질의 | <b>급여 적용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, 연간 2개 질환, 질환별 처방일수가 20일이 초과되었습니다. 청구가 가능할까요?</b>   |
|    | 답변 | 일단 시스템이 재개되면 실시내역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추후 추석 기간 첨약 시범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심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.   |

## □ 자동차보험 첨약 · 추나요법관리시스템 관련

| 순번 | 구분 | 세부내용  |
|----|----|---|
| 1  | 질의 | 관리시스템이 중단되면 첨약 및 추나요법 진료를 할 수 없나요?  |
|    | 답변 | 추석기간 중 시스템 중단 기간에도 정상 진료 실시가 가능합니다. 단, 첨약 및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합니다.  |
| 2  | 질의 | 시스템 중단 기간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  |
|    | 답변 | 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별 실시횟수의 실시간 조회·등록이 불가하므로, 사전에 첨약 및 추나요법을 시행하였던 환자의 처방일자 및 실시 횟수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별도 기록하여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야 합니다.   |
| 3  | 질의 | 시스템 중단 기간동안 진료 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  |
|    | 답변 | 자동차보험 적용기준 상 첨약 및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진료 상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실시 전에 환자의 진료기록 또는 환자 본인 확인을 통해 이전의 투여일수 및 실시횟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  |
| 4  | 질의 | 과거 첨약 처방일수 및 추나 실시횟수가 불명확한 환자의 경우 첨약처방 및 추나요법 실시가 가능할까요?  |
|    | 답변 | 추나 20회 초과 여부 및 한방첨약 총투여일수 확인이 불명확한 환자에게는 진료 상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를 확인하여 꼭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협의를 통해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환자 본인 확인을 통한 이전 투여일수 및 실시횟수에 대한 정보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여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한 문제 발생에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|
| 5  | 질의 | 추석기간 첨약·추나요법 실시내역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?  |
|    | 답변 | 실시간 조회 및 등록 시스템으로 타기관 등 원활한 진료를 위해 시스템이 재개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( <u>10월 13일 월요일 24시 까지</u> )에 환자별 실시내역을 등록하셔야 합니다.  |
| 6  | 질의 | 자동차보험 청구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, 환자가 실시횟수를 착각 하여 치료기간 중 추나요법 20회가 초과되었습니다. 청구가 가능 할까요?   |
|    | 답변 | 일단 시스템이 재개되면 실시내역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. 추후 추석기간 추나 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심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.   |
| 7  | 질의 | 건강보험 추나요법, 건강보험 첨약 시범사업의 관련 상세 문의는 어느 부서로 연락해야 하나요?   |
|    | 답변 |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환자 추나요법은 기준운영부로(☎ 033-739-4710~4) 건강보험 첨약 시범 사업은 수가개발부로(☎ 033-739-1556~7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  |

## 참고1 「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」

※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호, '21.1.14. 시행

### 세부인정사항

1. 추나요법은 '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'(대한한의사협회 주관)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요양기관(요양병원 제외)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며, 다음 외에는 비급여임.

- 다 음 -

가. 대상 질환: (별첨 3)에 명시된 질환

나. 인정 횟수: 환자당 연간 20회

※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

2. 요양급여 대상인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[별표2]제3호 라목 9)-10) 및 거목에 따라 (별첨 3)에 명시된 본인부담률을 적용함.

---

---

급여기준

---

1. 시범사업은 한약재를 조제·탕전하여 액상의 형태로 제공되는 "치료용 첨약"을 대상으로 한다.
  2. 첨약은 **1일/1회** 처방할 수 있으며, **하나의 기준처방에 대해 최대 10일분까지** 처방 할 수 있다.
  3. 대상환자는 **연간 두 가지 질환**에 한해 시범사업 적용 받을 수 있으며, 대상질환에 따라 시범기관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  4. 안면신경마비, 월경통, 알레르기 비염, 기능성 소화불량,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주상병,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에 적용한다.
  5. **한의사 1인당 최대 1일 8건, 월 60건, 연 600건까지** 처방이 가능하며, 이 경우 전액 본인부담(100분의 100 본인부담) 처방은 해당 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  6. 동일기관에 동일질환으로 재내원한 경우(이하 '계속처방'), 처방간격에 관계없이 첨약 행위수가와 한약재비는 요양급여를 적용한다. 다만, 총 투여 기간이 **연간 질환별 20일이 초과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.**(100분의 100 본인부담)
  7. 첨약 행위수가는 종별 가산 및 소아·공휴·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

## 참고3 「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기준」

※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-225호, '19.5.8. 시행

### 세부인정사항

- 추나요법은 '추나요법 급여 사전 교육'(대한한의사협회 주관)을 이수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한의사가 한방 진료과목 개설 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시행한 경우 인정함.

- 다 음 -

- 인정 횟수: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
- 복잡추나 인정 질환: 건강보험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 50%에 해당하는 상병
- 위 가,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.

※ 의료기관은 추나요법 시행 시 추나요법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진료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

## 참고4 「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첨약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」

※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98호, '24.4.21. 시행

### 세부인정사항

- 교통사고환자에게 처방하는 첨약은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 처방  
· 조제한 경우에 인정함.
- 첨약처방 시 첨약 처방내용\*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, 별표2 분류번호 베-1 '한방 첨약' 주의 처방일수를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.  
\* 첨약 처방내용: 첨약 처방사유, 방제 한약재의 종류 등
- 교통사고환자에게 첨약 처방 시 의료기관은 '첨약 등록 및 관리 시스템'을 통해 '자동차 보험 첨약 처방 · 조제내역서'(별지 제13호 서식)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.